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0.07.05

개정일: 2021.08.26

담당부서: 연구처 - 연구전략팀(02-2123-515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와 제9호에 근거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산학협동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원, 미래캠퍼스의 특례)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소속된 교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제2장 절차 및 신분

제3조 (신청자격) 본교의 전임교원은 창업교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8.21.>

제4조 (신청절차) ① 창업교원은 소속 학과 인사위원회의 의견과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처를 경유해 제9조의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08.21., 2016.1.29.>

② 위원회는 창업신청 교원의 창업의 타당성, 윤리성, 교육 및 연구 성과 등을 복합적으로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단, 창업신청 교원이 윤리적 문제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창업 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일자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1. 8. 26.>

③ 창업교원의 소속기관은 제2항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교무처에 신청 교원의 겸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기간) ① 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창업교원은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및 연장신청서를 연구처를 경유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창업기간의 연장신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3. 창업교원의 소속 기관은 심의 결과를 근거로 교무처에 겸직 연장을 요청한다.
-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같은 지분 보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별도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재승인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최초 재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반복해서 재승인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2. 15.>

제6조 (재창업 제한) <삭제 2019.08.21.>

제7조 (창업회사의 형태) 교원이 창업하거나 또는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창업교원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이어야 한다. 다만,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15.]

- 제8조 (신분)**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이 기간 중에는 겸직을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창업교원의 겸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③ 창업교원은 창업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교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④ 창업교원이 창업활동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휴직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무처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관장

- 제9조 (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창업에 관한 제반 절차와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업무는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 단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창업지원단 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3인 이상의 창업관련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03. 14., 2019. 08. 21., 2020. 7. 27., 2021. 2. 15.>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9.>

제10조 (서류의 제출) 창업을 신청하는 교원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기자재 이용) 본교의 유허 연구기자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창업교원의 기업에 무상대여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제12조 (협약의 체결) ① 창업교원은 창업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위원회를 거쳐 총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1. 창업대상기술
 2. 대학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상세내역(공간, 시설, 장비, 행정지원 등)
 3. 지분기여계획. 지분은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창업교원 보유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사의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사의 자본금이 최초 1억 원을 초과하는 증자 시점에, 창업교원은 학교가 창업사의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보통 주식 100분의 5 또는 창업교원 보유 주식 100분의 10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가로 증여한다.
 - 3의2. 교내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캠퍼스 별 지분 기여의 합이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조직과의 창업대상기술 사용과 관련한 사전 협의된 조건
 5. 기타 특별한 사항
- ②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3호의 지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술이용권) 창업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창업교직원의 의무

제14조 (도덕적 의무) ① 창업교원은 대학과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7.30>

제15조 (비밀유지) 창업교원과 창업에 관련된 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7.30.>

제16조 (보고 의무) ① 창업교원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법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신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업교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하는 등 창업회사의 주식 변동이 예정된 경우, 해당 주식의 매각, 양도 예정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짜로부터 1개월 이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가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5.>

[제목개정 2021. 2. 15.]

제17조 (창업교원 승인 취소) 이 규정에 의해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교원으로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이 규정 제8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협약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총장이 창업교원 승인을 취소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기타) ①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규정류 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내지 12조, 제15조, 제17조 내지 19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개정, 제9조 제4항 신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조항 발효 이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2조 제1항 제3호)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9조 제2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15.>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연구부총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8. 26.>

(12)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